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

자료정리/기획관리팀

□ 추진경위 및 일정

- 전기공사업법 개정공포 : '99. 1. 29. 법률 제 5726호
-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99. 2. 25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58호
-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 : '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
- 동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99. 7. 16 산업자원부령 제80호

□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기공사의 범위 및 종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전기공사기술자는 종전에는 전기공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만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분야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도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공

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경력의 확인 절차를 정함(시행령 제3조 및 별표2, 시행규칙 제2조)

- 전기공사법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를 새로이 정함(시행령 제6조 및 별표3,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8조)
-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시행령 제9조)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 별로 시공관리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함(시행령 제12조 및 별표4)
- 공사업자에 대한 수급한도의 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절차 등을 정함(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2)

[부분 발췌]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지면관계상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전기공사 등) ①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전기공사) ①-----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를(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에 관한 공사	2. 전기사용장소의 배관·배선·덕트·전동 및 전기기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3. 전기철도 및 전차시설에 관한 공사	4. 신호보안 설비에 관한 공사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 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 공사
5. 항공보안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5. 기타 전기설비 공사	

현행	개정
<p>6. 배선인 및 선전등·신호등의 설치공사</p> <p>7. 전기계장·전기공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p> <p>8.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중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p> <p>9. 지중 전선로 공사</p> <p>10. 제1호 내지 제9호에 수반되는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p> <p>②법 제2조 제4호에서 “전기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p> <p>1. 전기기술사</p> <p>2. 전기공사기사 1급</p> <p>3. 전기공사기사 2급</p> <p>〈신설〉</p>	<p>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p> <p>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제4조(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된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확인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④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면허기준)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자본금(법인 이외의 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공사면허대상) (생략)</p> <p>〈신설〉</p>	<p>제6조(등록기준)①법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 ----- 기준중 ----- ----- -----</p> <p>〈삭제〉</p> <p>제7조(공사면허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현행	개정
<p>제9조(공사업자의 통지 등) (생략) 제10조(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생략) 제11조(위원장) (생략) 제12조(회의) (생략) 제13조(간사 및 서기) (생략) 제14조(수당) (생략) 제15조(운영세칙) (생략) 제16조(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 (생략) 제19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22조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생략) 2. (생략) <신설></p>	<p>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을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p> <p><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p> <p>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 - - - - .</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제9조(전기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9.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
	<p>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p> <p>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p> <p>13. 공사가 완성된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p> <p>14.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p> <p>15.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하자 담보방법</p> <p>16.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p> <p>17. 기타 다른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제17조(시공관리의 기술적 제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p>	<p>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법 제16조제2항의 -----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4-----</p>
<p>제18조(전기기술자의 교육)(생략)</p>	<p><삭제></p>
<p>제20조(수급자격 등)</p>	<p><삭제></p>
<p><신설></p> <p>제24조(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생략)</p> <p>제35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24조(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생략)</p>	<p><삭제></p>
<p>제35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등록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영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도급계약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신설) <별표1>

전기공사의 범위 (제2조 제2항 관련)

구 분	공사의 종류	공 사 의 예 시
발 전 · 송 전 · 변 전 · 배 전 설 비 공 사	발전설비공사	○ 발전소(원자력, 화력, 풍력, 수력, 조력, 태양열, 내연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
	송전설비공사	○ 가공송전설비공사 : 가공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 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가선공사(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보호선·보호망공사 ○ 지중송전설비공사 :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 구설비공사, 공동구내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 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물밀 송전설비공사 : 물밀 전력케이블설치공사 ○ 터널내 전선로공사 :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내 전선로공사
	변전설비공사	○ 변전설비기초공사 :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 모선설비공사 : 모선가선(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 변전기기설치공사 :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 피뢰기 등 변전기기설치공사 ○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 보호·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배전설비공사	○ 가공배전설비공사 :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 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 지중배전설비공사 :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 구설비공사, 공동구내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케이블설치 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물밀 배전설비공사 : 물밀 전력케이블설치공사 ○ 터널내 전선로공사 :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내 전선로공사
산 업 · 시 설 물, · 건 축 물 · 및 · 구 조 · 물 의 · 전 기 · 설 비 · 공 사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 시설, 기타산업설비를 말한다)등의 전기설비공사 ○ 공장자동화 등의 운전, 감시, 신호전달을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의 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 전원설비공사 : 수, 변전설비공사(큐빅쿨설치공사 포함),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발전기, 축전지설비,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및 보호설비공사 ○ 전원공급설비공사 :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트레이를 포함) 등의 설비 공사 ○ 전력부하설비공사 :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 포함), 콘센트 등 기계·기구 및 동력설비공사 ○ 반송설비공사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도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전기설비공사 ○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 : 서지, 낙뢰설비, 잠음·전자파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 등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법 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전기설비의 전기공사 ○ 인공지능 빌딩시스템 설비공사 : 인공지능 빌딩시스템 (IBS)설비중 전기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공사 ○ 약전설비공사 :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설비 ○ 기타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전식방지공사 :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 동결방지공사 : 재설·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경온도 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 신호 및 표시설비공사 : 네온사인, 큐빅보드, 전광판,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기타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	○ 가로등 설치공사 :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 등의 설치공사 ○ 기타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공항전기설비공사	○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 기타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항만전기설비공사	○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 기타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 신호 공사	전기철도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 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철도신호설비공사	○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정지장치, 열차 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 설치공사
기타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 전기기계·기수(발전기, 변압기, 커패시터,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 건축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 기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신설) <별표2>

전기공사기술자(제3조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전기공사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1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전기공사	○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기술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원자력 발전
 나. 기능장 : 전기공사
 다. 기사 : 전기공사, 철도신호, 공업계측제어, 원자력
 라. 산업기사 : 전기공사, 철도신호, 공업계측제어
 마. 기능사 :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 위 표의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와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위 표에서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기공사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위 사항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	
<u><별표 1> 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u>			<u><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안 제6조 제1항 관련)</u>	
항목	제1종공사업	제2종공사업	항목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1. 전기공사기사 1급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 3인 이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1. 전기공사기사 2급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기술능력	○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2000년12월31일까지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금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300좌 포함)	5천만원 이상	자본금	○ 1억원 이상(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기공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출자증권 20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00좌이상,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0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용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50㎡ 2. 장비 : 부표와 같다.	1. 사무실 : 33㎡이상 2. 장비 : 부표와 같다.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공사실적	3억원 이상	2천500만원 이상		

현	행	개	정														
<p>※ 비 고</p> <p>1) 자본금(자산평가액)은 전기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 (자산평가액)을 말한다.</p> <p>2) 공사실적에는 전기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구입은 제외한다.</p> <p>3) 공사용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4) 기술능력기준상의 전기기술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능계기술자는 전임직원으로 상시보유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중 1인 이상이 전기기술자이어야 한다.</p> <p>5) 전기공사기능계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 기능장, 전기공사기능사 1급 및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자를 말한다.</p>		<p>※ 비 고</p> <p>1. 기술능력</p> <p>가. 위표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p> <p>2. 자본금</p> <p>가. 자본금은 공사를 위한 실질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p> <p>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 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p>															
<p><별표 2>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p>		<p><별표 2>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안 제1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25%;">전기기술자</th> <th style="width: 75%;">시공관리구분</th> </tr> </thead> <tbody> <tr> <td>전기기술자 및 전기공사기사 1급</td> <td>제2조 제1항에 계기한 전기 공사</td> </tr> <tr> <td>전기공사기사 2급</td> <td>제2조 제1항에 계기한 전기 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 볼트 이하의 전기공사</td> </tr> </tbody> </table>		전기기술자	시공관리구분	전기기술자 및 전기공사기사 1급	제2조 제1항에 계기한 전기 공사	전기공사기사 2급	제2조 제1항에 계기한 전기 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 볼트 이하의 전기공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th> <th style="width: 50%;">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특급·고급전기공사기술자</td> <td>○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td> </tr> <tr> <td>2.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td> <td>○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td> </tr> <tr> <td>3.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td> <td>○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td> </tr> </tbody> </table>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특급·고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2.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전기기술자	시공관리구분																
전기기술자 및 전기공사기사 1급	제2조 제1항에 계기한 전기 공사																
전기공사기사 2급	제2조 제1항에 계기한 전기 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 볼트 이하의 전기공사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특급·고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2.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p>비 고</p> <p>1.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이 영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1급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p> <p>2.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2급이 자격을 취득한 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3월 28일 이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그 자격이 변경되어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이 영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2급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p>																	